

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11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조항은 정부외의 자로부터 출연금, 후원금, 성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,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협의회는 진료수입,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(안 제8조 제1항)

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출연금등으로 ”
를 “ 진료수입, 보조금등으로 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8조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 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	제8조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보조금등으 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 건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.	정부외의 자로 부터 출연 금, 후원금, 성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,접 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에 위배되기 때문임.